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 이인규

국가인권위원회



EM022084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연구보고서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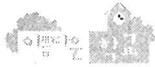


연구책임자 : 이 인 규

국가인권위원회



EM022084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5. 11. 28.

연구책임자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공동연구자

김민경 (서울미술고등학교)

박현희 (구일고등학교)

이광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이선명 (서울미술고등학교)

조인제 (역사문화아카데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여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국내외 인권교육 동향을 살펴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국내외의 대표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 상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은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집약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 매뉴얼 형태로 제작되며, 각 학교에는 매뉴얼이나 한글 문서(hwp) 파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들은 문서에 들어있는 활동지(work sheet)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다. 총 1개 학년에 하나의 교과로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창의적 재량시간에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50분 단위라는 고등학교 시간을 준수하고, 학기당 17단위를 1 교육과정 시간으로 보는 현재의 학교 체제에 맞추어 32차시 분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34차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창의적 재량시간의 특성상 진행하는 데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여야 한다.

- (1)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가 달성되기를 원하는가? 목표를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기능적 목표로 세분화할 때, 인권교육은 각각 어떠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가?

- (2)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쳐야 할 지식과 가치는 무엇인가? 선행 교육과정이나 동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식을 계열화할 것인가?
- (3) 어떤 프로그램의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학교 체제에 부합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법들은 무엇인가? 특히 인권교육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
- (4)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교사들은 각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점검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성취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목표, 내용 구조, 차시별 흐름, 진행 방법, 활용시 유의사항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연구 보고서에는 인권 및 인권교육을 둘러싼 이론적 배경, 국내외 인권교육 동향, 타 프로그램 벤치마킹, 쟁점 논의 등이 포함된다. 인권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는 인권의 역사적 배경, 인권의 성격, 인권의 여러 개념, 인권교육이 기술된다. 인권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일반적인 목표와 내용, 방법이 차례로 다루어진다. 국내외 인권교육 동향에서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인권교육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는 학교 및 국가기관, 시민단체의 인권교육 현황을 소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의 타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벤치마킹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들의 장점을 모아 본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분석 도구로는 프로그램의 목적, 방법론적 특징, 학교 적합성 등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은 학교의 선택적인 교육 내용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

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행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엄성, 타인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을 내면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학교가 인권이 충만한 현장이고 인권 의식이 퍼져가는 보루로서 스스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

목 차

I. 들어가는 글	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14
3. 연구방법 및 절차	16
4. 연구의 기대효과	17
II. 인권과 인권교육	19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21
2. 인권교육의 이해	29
3. 국외 인권교육의 동향	40
4. 국내 인권교육의 동향	43
III. 국내외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분석	47
1. 국외 인권교육프로그램 분석	49
2. 국내 인권교육프로그램 분석	58
IV. 연구개발상의 논의들	71
1. 인권교육의 정의는 무엇인가?	73
2. 학교 인권교육의 핵심적 목표는 무엇인가?	74
3. 학교 인권교육의 정당한 관점은 무엇인가?	75
4. 학교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77

5. 북한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78
6.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준거로 우리나라 헌법이 적절한가?	79
7. 인권교육도 인성교육의 기법을 차용하는 것이 좋은가?	80
8. 학교 인권교육이 과연 창의적 재량시간에 활용하는 교육 내용으로 한정할 것인가?	81
9. 학교 인권교육의 범주와 계열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81

V.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83

1. 프로그램의 목표	85
2. 프로그램의 구성	86
3. 프로그램의 차시별 흐름	87
4. 차시별 진행요령	90

VI. 맺 음 말 91

[참고문헌]	96
--------------	----

(표 목 차)

〈표 1〉 국제인권규약 A & B	24
〈표 2〉 각 세대별 인권의 내용	28
〈표 3〉 인권교육의 내용	38
〈표 4〉 2004년 시민단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45
〈표 5〉 UN 인권을 위한 고등관무관실에서 작성한 인권교육 개념도	55
〈표 6〉 ‘민주·인권 교육의 내용’ 구성 체계	63
〈표 7〉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 각 단원별 학습 주제	64
〈표 8〉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의 교육과정	65
〈표 9〉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제3장의 내용 구성	67
〈표 1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방법 분석	69

I. 들어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권교육은 학교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라고 밝히고 있고, 26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조약에서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이 인권교육의 환경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인권교육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인권교육이 당위론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어 실제의 문제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념적으로 기술된 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목표들은 학생들을 오히려 냉소적이게 만들거나 강박증적인 것이 되게 만든다. 실제의 문제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쉽게 무시하는 이중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도 당위론적인 접근이 갖는 한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도달하여야 할 높은 수준의 도덕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라는 정신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전개되고,

각자가 자신의 삶과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기본 정신임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를 놓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점검하고, 다양한 입장을 놓고 이를 절충하며, 결정된 원리를 실천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를 놓고 다시 피드백해 보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전형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파생성이 클수록 좋다.

Torney(1980)는 인권교육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권교육은 첫째,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둘째,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부여하며 셋째, 인권이 부정되는 곳에서 이와 관련된 쟁점 혹은 쟁점이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권리가 깃밟혀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입장을 내 입장에서 되돌아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바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육이며,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삶이 균형잡힌 채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그러기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곧 모든 교육의 으뜸을 차지하는 교육이 된다.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삶의 교육이 되려면, 그것은 적절히 통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권의 의미를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축으로서 인식하고 인권에 대한 내적 동기를 스스로 찾아내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동시에 인권이 억압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게 하며, 상생의 원리에 따라 서로의 인권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한꺼번에 달성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은 현실 속에서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를 개발하자는 데에 있다. 여기서 원하는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목표를 모두 통과하

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학교에서 채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학교는 자율성을 가진 하나의 체제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3년간 총 216단위의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움직이며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요원(agent)의 의해 작동된다. 수업 단위는 50분이며,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 이 수업 단위마저 변경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교육 이력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의 고려를 요구한다.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학교장은 교사 집단보다 더욱 보수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만약 고등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게 하려면 이러한 학교 시스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기꺼이 사용하려는 의지를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특정한 프로그램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간단한 자원 투입만으로도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는 아직 적응이 덜 되어 있으며, 교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어렵다. 성교육, 인성교육, 의사소통교육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실제 수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학교 주변에서만 맴도는 이유는 교사들이 너무도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손쉽게 교실에 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학습 동기와 흥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경우, 인권 교육처럼 아직 교육의 안정적인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손쉽게 다른 학과 수업으로 임의적으로 대체되거나 혹은 강제적인 형식이 동원된 수업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수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힘들거나 반인권적(?) 인권 수업이라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권 교육의 목표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만든 유쾌한 상황 속에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다.

넷째, 인권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치 민주화를 넘어 사회 민주화를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국민 각자들이 인권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과 가치 원천들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인권에 대한 재개념화(conception)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가치 원천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에 직접 투입되는 의사 문제해결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인권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가진 시민, 인권 문제를 개선할 능력이 시민이 육성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의 인권교육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교육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권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의 시도는 인권 교육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작하는 국정 교과서와 같은 지위가 아니라, 그저 국가기구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경쟁하는 인정 교과서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 매뉴얼 형태로 제작되며, 각 학교에는 인쇄본과 한글 문서(hwp) 파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들은 문서에 들어있는 활동지(work sheet)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다. 총 1개 학년에 하나의 교과로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창의적 재량시간에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50분 단위라는 고등학교 시간을 준수하고, 학기당 17단위를 1 교육과정 시간으로 보는 현재의 학교 체제에 맞추어 32 차시분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34차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창의적 재량시간의 특성상 진행하는 데 여유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가 달성되기를 원하는가? 목표를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기능적 목표로 세분화할 때, 인권교육은 각각 어떠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가?

(2)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쳐야 할 지식과 가치는 무엇인가? 선행 교육과정이나 동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식을 계열화할 것인가?

(3) 어떤 프로그램의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학교 체제에 부합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법들은 무엇인가? 특히 인권교육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

(4)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교사들은 각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점검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목표하는 바를 성취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목표, 내용 구조, 차시별 흐름, 진행 방법, 활용시 유의사항 등을 차례로 기술하는 과정을 갖는다.

연구 보고서에는 인권 및 인권교육을 둘러싼 이론적 배경, 국내외 인권교육 동향, 타 프로그램 벤치마킹, 쟁점 논의 등이 포함된다.

인권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는 인권의 역사적 배경, 인권의 성격, 인권의 여러 개념, 인권교육이 기술된다. 인권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일반적인 목표와 내용, 방법이 차례로 다루어진다. 국내외 인권교육 동향에서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인권교육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는 학교 및 국가기관, 시민단체의 인권교육 현황을 소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이들의 장점을 모아 본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분석 도구로는 프로그램의 목적, 방법론적 특징, 학교 적합성 등이 사용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학교 현장에 투입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연구 절차는 필요하다.

- (1)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각종 문헌 연구
- (2) 선행 및 동 단계(K10 단계) 교육과정 분석
- (3) 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4) 전문가 의견 조사
- (5)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 (6) 실험학교 운영 및 피드백
- (7) 연구진 및 자문진들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이 연구는 (1)과 (3), (7)만을 진행하고, (2)와 (5)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타 연구(구정화 외,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용린 외,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에 의존하였다.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각종 문헌 연구는 학교 인권교육에서의 기본적 지식과 가치 원천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특히 인권 개념이 최근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각종 선언과 조약, 법규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타 인권교육 프로그램 분석 대상으로는 미국의 FHAO(Facing History and Ourselves) 프로그램, 일본의 Dowa 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THRO 교육 프로그램등 3개의 해외 프로그램과, 인권 딜레마 토론수업,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초·중·고 인권교육 길라잡이,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인권교육 등 5개의 국내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분석되었다.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무척 강조되고 있는 개발 방법은 집단 회의이다. 차시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구하기 위해 연구진들의 집단 회의를 수시로 열었으며, 개발 방향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문진과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연구의 제5장에서는 집단 회의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쟁점들을 나열하고 쟁점 해결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4. 연구의 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기하였으며, 이를 실행하였을 때 기대효과 또한 크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총체적/구성주의적 접근법(holistic and constructional approach)이 활용된다. 내면에서의 각성, 적절한 지식, 가치의 내면화, 합리적 의사결정, 결단력 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직접적으로 인권 의식을 성장시키는 일원적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인권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게임을 하고 활동지를 작성하는 동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서로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학교 조직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설계되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이 교육적 환경을 넘어 실제적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인권을 지키고 활성화시키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의 삶과 주변 관계를 성찰하고 재조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학교의 인권 상황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인권교육에서의 지배자의 관점, 피해자의 관점, 리더의 관점이라는 세 관점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피해자적 관점을 공감하는 리더의 관점이라는 통합적이면서도 진보주의적 관점을 택하였다. 지배자의 관점이란 기존에 제도화된 인권 개념에 한정되어 이를 지키도록 하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적 관점은 사회적 소수자 입장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리더의 관점이란, 변화하는 인권 개념을 인정하고 인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기존의 인권교육 접근이 지배자의 관점이나 피해자 관점에서 서로 대립하였다면, 발전하는 인권교육의 역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가한 셈이다.

셋째, 학교 환경에 최고 적합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인권운동단체들이 개발한 학교 밖에서 캠프용 프로그램이라면, 이번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독립된 교과목으로 승인되기를 희망하면서 학교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여러 면에서 학교 체제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물론 학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채택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원 연수가 활성화되고 매뉴얼 보급이 원활해진다면 희망만큼 프로그램 실행이 일어날 것이 기대된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탐구 중심 인지적 접근법과는 많이 다르게 활동지(work-sheet), 시뮬레이션, 게임, 토론, 역할극, 브레인스토밍, 직접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 중심 모듈(module)을 구성하고 있다. 인권교육에서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역사에서 그 풍요로움을 추가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교도소, 군대, 경찰에서 진행되는 성인대상 인권교육이 강의용이 많은데, 이번에 개발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권수칙 매뉴얼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분화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권수칙 매뉴얼은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한 직접적인 내면화 기법이 중심이 된 것이라면,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에 관한 보다 구성주의적 접근이 중심이 된다. 본 프로그램은 바로 후자의 대표적인 표본이 될 것이다.

Ⅱ. 인권과 인권교육

II. 인권과 인권교육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상당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거두고, 사회전반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현재 우리의 인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과 추상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수광(2001)은 인권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인간관, 자연법이론, 정치·사회경제 이론 등의 배경으로 인해 인권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선명하지 못함을 고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으며, 인권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 상의 차이로 인한 논란이 있다고도 하였다.

최근의 인권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차와 개념에 대한 혼란은, 민주주의가 확장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인간의 삶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에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인권의 개념을 고찰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인권의 역사적 배경

(1) 근대적 인권으로서 자연권

인권학자들은 인권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및 로마에서 찾는다. 모든 생명체에는 보편적 힘이 존재하고, 인간의 행동 또한 자연법에 따라 판단되고 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자연법이론과 연관을 지우고 있다. 이에 관하여 바사크는 인권이란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자연권의 존재를 전제하는 이러한 주장은, 자연인으로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용희, 1994)

인권의 역사에 있어서 영국에서 일어난 13세기의 마그나카르타와 17세기의 인신보호령·명예혁명·권리장전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이 사건들은 17·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천부인권사상과 자연법론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적 인권 형성에 계몽주의자들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 유지와 이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인권으로 규정하였고, 18세기 말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통해 이는 실정법으로 성문화되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과, 1789년 프랑스혁명에 성공 후 제정된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declaration d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 그것이다. 두 선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며, 양도할 수 없는 자연의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언들은 중세의 억압적인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의 근거를 인권의 보장에서 찾음으로써 근대적인 인권보장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평등과 의회민주주의의 원리가 발전,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대시민혁명이 가져온 인권보장 체계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 근대시민혁명의 핵심적 이념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끝난 이후 자유와 평등은 상당부분 굴절 또는 축소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근대시민헌법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으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였고 ‘평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쳤을 뿐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자유’ 중에서도 시민계급이 철저히 옹호한 것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계약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였을 뿐, 일정한 재산을 갖춘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제한선거제도를 유지하는 등 정신활동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참정권 등 다른 자

유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제한하였다. 특히 주권의 소유와 행사를 분리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대다수 민중은 인간다운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근대시민혁명과정을 통해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선언된 권리가 실제적으로는 ‘능동적 시민’ 과 ‘수동적 시민’ 의 도식 하에 부르주아계급 남성이라는 “능동적 시민” 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근대시민헌법이 오직 부르주아계급의 남성들에게만 권리를 보장해주었던 역사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결과 자본주의 시장논리의 무한한 확장에 따른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인간적 노동조건,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 아동노동·빈곤·질병·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평균수명의 저하, 문맹(文盲), 범죄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철저한 자유방임적 자세를 고수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쌓여가고 시장의 가혹한 착취가 자본주의 체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까지도 위협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과 강력한 국가가 요청되었다.

(2) 세계 속에 보편화되는 인권 - 국제인권장전

현재와 같이 인권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권에 대한 개념은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백인·남성·자본가계급의 관점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즉, 제3세계 국가들과 여성·소수민족·유색인종 등은 여전히 인권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다.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고, 이는 유엔의 창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유엔헌장은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 ‘기본적 인권’ 이 중요함을 인정했다. 그리고 1946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이 유엔총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언’ 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실효를 발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세계인권선언을 국제법의 형태로 법제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일명 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일명 자유권 규약 또는 B규약)이 채택되었고, 모두 1976년 정식 발효되었다. 두 규약은 국제인권법으로서 한국은 1990년에 정식 가입하였다. 이들 규약들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A 규 약	B 규 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힘쓸 의무가 있다. 2. 국민은 일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을 받으며 알맞는 생활수준을 지탱할 권리,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자유, 건강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구나 가진다. 3. 국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 가입하는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는 국민이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할 책임을 진다. 2. 국민은 생명의 자유와 안전·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노예제도의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함부로 체포·감금당하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소신과 발표의 자유, 평화적 집회를 가질 권리, 이민의 권리,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표 1> 국제인권규약 A & B

이러한 세계인권선언과 두 규약 모두를 일컬어 『국제인권장전』라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언적 의미나 이상에서 벗어나, 규약이라는 형식으로 명문화됨으로써 ‘인권’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에 보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인권NGO들의 국제 연대활동과 인권의 공식 의제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고 국제인권규약이 만들어졌지만, 이들을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여러 인권NGO들이 각국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은 인권의 이행을 감시하고,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당시 냉전시기에 자본주의 진영에서 발생한 인권탄압과 동구권에서 발생한 인권탄압을 동시에 고발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헬싱키협정과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함께 공식통로를 통한 인권 의제도 대폭 늘었다. 1970년대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는 국익추구라는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외교무대에서, 세계평화와 공존이라는 도덕적 이상주의의 ‘인권외교’를 수용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의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 속에서 그 폭을 넓혀왔다.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인간의 메마르지 않는 갈망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의지로부터 시작해 여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순한 선언을 지나 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는 의미로 성장을 하였다.

결국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갖는 보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해야할 특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권리인 것이다.

나. 인권의 성격

인권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은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광범위한 인권의 성격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법성

인권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누리는 권리이고,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초(超)실정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2) 보편성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 온 인권은 인종, 성, 국적,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 한다.

(3) 상호의존성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4) 상호불가분성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추구하며 ‘공포나 억압’ 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권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일정한 수준에서의 생존을 의미하는 사회권으로 구체화되는데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5) 불가침성

인권은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가권력 이외의 사회적 강자에 의한 침해로부터도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후손에게도 영구히 보장되어야 한다.

(6) 정당성 근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원리의 필연적 귀결로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고,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다. 인권의 내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권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할 때 크게 3단계(혹은 세대)로 파악한다. 이는 프랑스의 법률가 카렐바사크가 프랑스혁명의 3가지 구호를 근거로 설정한 것이다. 첫째는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 둘째는 평등에 근거한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셋째는 새롭게 우애·박애라고 하는 연대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를 인권이 발달해온 단계에 따라 1단계·2단계·3단계라고 하고, 역사적으로 인권의 확장에 따라 1세대·2세대·3세대라고도 한다.(구정화 외, 2004)

(1) 1세대 인권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으로서, 17·18세기 서구 근대화과정의 정치적 혁명들과 관련이 있다. 자유주의적 철학에 영향을 받아 ‘~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1세대 인권을 소극적 권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자유로운 선거의 권리’ 등도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다. 1세대 인권의 핵심은 국가의 막대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1세대 인권에는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자유와 권리가 그 내용을 이룬다.

(2) 2세대 인권

2세대 인권은 서구 자본주의의 지나친 발달과 자유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평등중심의 인권으로서 19세기를 전후로 발달하였다. 2세대 인권의 특징은 일정한 분배 정의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1세대 인권에 비해

‘~에 대한 권리’로서 적극적인 권리로 여겨진다.

2세대 인권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이 내용의 중심이다. 노동의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그것이다.

세 대	인 권 의 내 용
1세대 (자유권적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 노예나 노예적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 -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 - 자의적 구금, 체포,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개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언론과 표현의 자유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세대 (사회권적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문화에 대한 권리
3세대 (집단권 또는 발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결권 :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평화에 대한 권리 -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할 권리 - 자원, 과학기술, 정보, 문화 등 인류 공동의 자산에 공동으로 참가할 권리 - 인도주의적 재난구제를 받을 권리 - 환경에 대한 권리

〈표 2〉 각 세대별 인권의 내용

(3) 3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은 앞의 두세대 권리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과 집단에서의 소수자, 그리고 세계에서 제3세계 등과 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권리가기 때문이다.

3세대 인권은 인권이 약자를 위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여성과 인종 문제, 제3세계의 빈곤 문제, 국제적 무기경쟁과 핵전쟁에 대한 위협, 그리고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인권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1·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3세대 인권은 공동체와 사회전체 구성원들의 단결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 환경적 가치, 문화와 종족적 동일성의 보존, 그리고 건강한 경제발전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화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유출, 포르노산업의 무차별적 공략, 해커나 크래커의 불법행위 등이 가하는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들도 등장하고 있다.

2. 인권교육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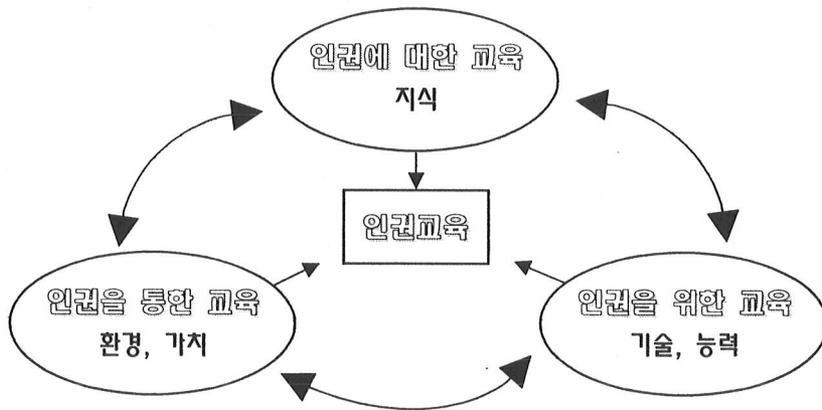
가. 인권교육의 개념과 의의

인권교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교육을 일종의 인간행위로서 파악할 때,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인권교육이란 인권을 가르치는 행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인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인권교육인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인권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인권적인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적인 삶이란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지키는 삶,

즉 나뿐만이 아닌 타인의 인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및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추구하도록 하는 일체의 교육적 노력’ 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리스터(Lister: 1984)는 인권이 갖는 특징에 비취 단순히 인권의 내용만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과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 인권교육의 세 차원(국가인권위원회, 2004)

즉, 인권교육이란,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Education about Human right)에서부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고 비폭력적 인권 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Education for Human right), 그리고 인권을 인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하는 것에 이르는 종합적인 교육이다.

전 세계는 이러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여러 문헌에 적시하여 놓았다. 『UN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제29조 1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목표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 연합 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을 지향하였으며, 제42조에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였다. 국내에서도 뒤늦게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4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의 업무를 수행할 것” 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인권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인권 교육이 개인에게나 사회 양자에게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인권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간적 삶을 누릴 권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올바른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꾀할 수 있게 한다.

한편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간의 사회성에 기초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의식과 철저한 상호존중의 사고방식을 일깨워준다. 이것은 수직적·수평적 인간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며, 성별·계층별·지역별·개개인의 사례별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지위의 배분 등에 관한 차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준다.

결론적으로 인권교육은 개인에게 자아정체감을 확립시키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존중 의식을 함양시킨다 할 것이다.

나. 인권교육의 필요성

앞서 인권교육이 무엇이고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즉,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권교육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1) 전 지구적 요구로서 인권교육

제1·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권교육이야말로 인류가 당면한 야만을 극복하고 인권과 세계평화를 위한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힘이라는 것에 광범위하게 합의해 오고 있다. 이는 냉전이후 맞은 21세기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시대적·전지구적 요구인 것이다. UN에서 1948년에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의 제26조(교육을 받을 권리)

의 제2항은 이러한 전지구적 요구로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26조 제2항에서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인종집단·종교집단간의 이해·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을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로 규정해 왔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세계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가 1989년에 채택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도 국가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강화하고 관용 및 평화를 증진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1994년 유엔 총회는 ‘유엔 인권교육 10개년’(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를 선포하여 그 행동계획에서 인권교육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규정하며, 인권교육의 국가적 이행체계를 마련함은 각국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녕, 2000) 그리고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역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내용 안에도 인권교육은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은 전 지구적 요구이며,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2)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과 민주주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장의 정도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로 여겨진다. 즉 민주주의가 진척된 사회일수록 개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인간존엄의 유지와 도덕의 실천’, 곧 ‘인권’의 구현 자체를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김녕, 2000)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은 민주적 사회를 맞이한 것은 불과 10년이 조금 넘었다. 해

방이후 40여 년간을 독재의 그늘 아래 살아왔다. 이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 당해왔고,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랜 군부의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적 정부를 탄생시켰고, 나아가 인권법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권기구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피해구제를 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분명 괄목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미흡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그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권의 향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 근간으로서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인권교육을 통해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안에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을 확산시키며, 그들을 시민사회의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세워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3) 청소년 인성교육으로서 인권교육

한국 사회 곳곳에는 생명 경시 풍조와 폭력이 난무하고, 도덕성의 위기, 인성의 위기를 모두가 한탄하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왜 늘 공염불일까? 수 없이 반복되는 인재(人災)에 의한 대형사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정부패, “민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되뇌는 우리 사이의 쪼그라든 신뢰와 커져가는 불신, 생명 파괴에 대한 불감증 등을 자초한 원인의 하나로 우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의 입시위주의 공교육과 사교육, 전문교육·취업대비 위주의 대학 교육, 그리고 가정교육도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일까. 쉽게 풀자면, 그것은 인간이 지닌 개인성과 사회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성숙시켜 참다운 인간이 되도록 하는 교육일 것이다. 특히, 개인적인

자아실현만으로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깨우치며, 개인성보다는 사회성, 곧 공동체적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교육이 만들어 내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장애인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도우려 애쓰는 인간, 소낙비를 맞고 있는 이웃에게 적어도 자기의 처마 밑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간, 전쟁 영웅을 찬양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안의 일개 보병 병사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아는 인간, 자기 아이에게 남의 아이들도 그만큼 귀하다고 가르칠 줄 아는 인간, 재산·명예·권력보다는 인권·정의·평화·관용 등의 가치를 더 목말라하는 인간,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묻기보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인간 등이 아닐까. 이는 곧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과 저네들 모두가 지니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인간일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곧 인권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교육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다. 인권교육의 목표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UN인권교육진흥 10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를 하였다.

첫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이다.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인지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자유로운 삶을 누릴 기본적 권리를 가졌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과정이자,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깨우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개인의 인성과 타고난 존엄성의 충분한 개발”이다. 인권교육은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인성과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

키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단지 어느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모든 인류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 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등과 우정의 증진” 이다. 현실적인 삶의 조건은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오늘날의 세계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양심과 이성애 따라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의 이해가 획일성이나 전체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평등과 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인 참여” 를 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권교육은 인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찾아주고자 하는 사회적 연대가 이뤄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UN인권교육진흥 10년’ 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여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목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분단국가로서 남북한 공히 평화로운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호 인권을 존중”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해방이후 50여 년간 분단국가로서 남한과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과 냉정체제 등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었고, 최근에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이산가족이 살아있고 남한에는 아직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은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인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라. 인권교육의 내용

Lister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과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 즉, 인권교육은 머리(인지영역-지식), 가슴(정의영역-가치), 손(행동영역-기술)을 동시에 총동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권교육의 내용은 지식·기술·가치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지 식

인권교육에서 우선 인권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가르쳐야 할 지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과 내용, 인권의 역사와 함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투쟁과 만델라, 노동인권운동과 전태일의 사례처럼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인물과 주요 사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파괴적 결과, 유엔이나 국내외 인권단체 등 인권보장과 인권기준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과 인권보장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기 술

인권교육은 인권적 지식의 학습과 함께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서 인권적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내는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능력, 긍정적이고 상호존중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 비폭력적·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인권보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 가 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의식과 가치, 신념은 사회적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폭력과 억압, 지시와 강제가

지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결코 인권의 존엄성과 권리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없다.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인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자유, 평등, 평화, 관용, 민주주의, 정의, 사회적 연대 등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가 녹아있는,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과정은 학습자와 교사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경청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동등한 참여와 기여가 보장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존중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필연적으로 폭력적 문화와 비민주적 의사결정체계, 억압적 규율과 교수방법이 지배하고 있는 학교의 재구조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 미네소타대학 인권교육자료센터에서 2000년에 발간한 The Human Right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에 제시된 인권교육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만하다. 이 책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첫째, 세계인권선언 안에 제시된 기본적인 인권의 원리들과, 둘째, 이후 선포된 인권 관련 국제규약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인권 발전의 역사, 셋째, 인권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넷째, 인권 관련 가치와 기술 등의 네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문용린 외, 2003)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여 놓았는데 <표 4>와 같다.

인권 관련 문헌과 인권의 역사에 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역사적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 전통 속에서의 인권의 근원 - 국내·국제 역사에서 인권 관련 역사적 사건들 ● 세계인권선언(UD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권선언의 초안, 영향, 중요성 ● 국제 규약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권선언과의 관계 -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정의 -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의 - 두개의 문헌이어야 했던 역사적 이유 ● 국제 인권 선언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국제법 제정의 절차 ● 승인의 절차와 그에 관련된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하는 정부가 지니는 의무 ● 기타 인권 관련 국제 조약(예컨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차별 폐기에 관한 협약 등) ● 인권 관련 국제 조약들이 집행되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의 집행 체계 - 고소 절차 - 감독 절차 ● 인권 관련 지역 조약과 체계들 ● 인권에 관한 미신들 ● 인권 관련 용어

인권 관련 사건, 문제에 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문제 · 주제들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학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 주제들에 있어서의 중요 변화 - 관련 사례들 ● 문제 · 주제들과 관련된 특정 인권 ● 문제 · 주제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사례 - 침해범들 - 인권 침해를 범한 사람들의 책임 - 희생자들 - 기타 그와 관련된 사실들 - 다른 인권과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 주제들을 다루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예 - 실패한 예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 - 새로운 전략 ● 문제 · 주제들에 대한 연구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사 - 가능한 자원 - 새로운 접근
인권 관련 가치와 기술에 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태도, 가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경험에 대한 비판 -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인식 - 차이의 수용 -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방어의 책임 - 타인에 대한 경청 - 합의의 형성 - 갈등의 중재와 해소 ● 문헌 분석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개념의 관점에서 역사적 상황과 현재의 상황 분석 - 연구, 기록, 자료 수집 - 특정 인권 침해 사례와 어떤 문헌이 적용되는 지에 대한 결정 - 특정 사례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통해 관련 법규를 집행할지에 대한 결정 - 정보에 대한 비판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위해 국가책임 요구 -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위해 개인적 책임 요구 - 인권 문제의 제기를 위한 행위 전략의 수립 - 인권 관련 주제를 내용으로 한 타인에 대한 교육 - 인권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연합 형성, 공동체 조직 - 인권을 주제로 한 관료들에 대한 로비 활동 - 대중매체의 활용 - 지지 노력에 대한 평가 - 공동체 조직

〈표 3〉 인권교육의 내용

마. 인권교육의 방법

인권교육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참

여와 행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교육 제안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 제안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훈시적 교육 대신에 인권교육에서 최우선 목표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그들 자신의 객관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용길·이희길, 1996) 이에 국제사면위원회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인권의 맥락을 파악하는 활동 등과 함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인권교육의 방법은 ‘참여 중심적’이며 ‘활동 중심적’ 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참여와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인권교육 또한 인권의 실현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교육의 과정 그 자체가 해방의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출발은 학습자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학습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지식을 가장 큰 교육의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역동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인권교육의 과정을 통해 참여의 기쁨을 알고 참여능력을 기르게 된 학습자는 결국 자신의 삶과 그 삶이 구성되고 있는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일방향적·지시적·권위적 교육이 아닌 경험적, 활동중심적, 참여적, 변증법적, 분석적, 문제제기식 교육의 원칙 하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역동적으로 창조·재구성되는 지식, 쌍방향적 의사소통, 학습자의 역동적 참여 보장, 지시자나 이미 고착화된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지식의 재창조 과정에서의 촉진자·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의 기회 부여,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을 둔 자기학습의 기회 보장 등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의 원칙인 것이다.

3. 국외 인권교육의 동향

가. 해외 국가인권교육계획과 시행체제

인권교육의 당위성과 그 원칙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1994년 12월 UN에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권장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각국 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모든 인권에 관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여, 전 세계 각국이 인권교육의 증진에 힘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 UN의 인권교육 행동계획에는 『국가인권교육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및 비정부 활동가들의 광범위한 협력 하에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된 각국의 국가인권교육계획과 시행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홍구·이대훈, 2003)

첫째, UN 인권교육 행동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제안된 인권교육 전담 국가기구(국가인권교육위원회)의 설립사례는 거의 없었다. 대다수의 국가가 정부 부처간 협의체제 또는 기존의 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문위원회 등)의 주도와 영역확장으로 실시되었다.

둘째,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추진본부’와 ‘국가인권교육 훈련위원회’와 같은 인권교육 전담 국가기구를 설립하였다. 이는 정부 부처간의 합의 체제에서 보다 강화된 계획성과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오사카부의 선구적 노력과 일본 정부 차원의 추진기구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노력,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네트워크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민간단체를 배제한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

넷째, 별도의 인권교육계획 수립 없이 ‘시민성 교육’으로 인권교육을 포함시켜 공교육 내에 인권교육의 심화와 확장을 꾀한 영국 사례와 비슷한 맥락에서, 외국인혐오증과 차별에 집중하는 일종의 시민성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강조하는 독일의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권교육 활성화에서 정부의 주요 역할을, 정책적 의지부처간 협의·공교육 내의 인권교육 체계화·공무원사회 내의 인권교육·시민사회 인권교육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해외의 인권교육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영국과 일본의 인권교육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권에 대한 관심과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일본은 1997년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영국의 인권교육

영국은 1997년 “Excellence in Schools”라는 제목의 국가 교과과정 평가서가 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공교육 내에 민주주의와 시민성(citizenship) 교육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시민정신 및 인권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고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는 의회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채택하여 이에 수반하는 훈련프로그램과 자료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0년부터는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2002년부터는 중등학교 공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교육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 학교에 교육지침을 배포하고 교육부에서 직접 체계적인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하였다.

영국의 시민성 교육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편견과 차별, 갈등해소, 시민사회의 자발적 시민활동 역할, 정부의 형태, 공공서비스, 법률 및 형사제도, 여론의 형성, 지역동체 활동, 경제체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한홍구·이대훈, 2003)

이처럼 영국의 인권교육은 시민성 교육의 틀 속에서 사회교육·종교교육·인간관계 교육과 혼합되어 있다.

(2) 일본의 인권교육

일본은 영국과 달리 UN의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UN에서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이 채택된 바로 다음 해인 1995년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추진본부”를 설치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부서간 협력 체제를 만들고, 1997년 국가인권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고 매년 인권교육 실천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인권교육은 일본헌법, 교육기본법,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나타난 내용과 정신을 통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초·중등 교육에서 인권교육은 각 교과목의 특징에 맞추어 학교별로 전 교육과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둘째,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다양한 교사 교육과 프로그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인권교육은 중학교에서는 주로 도덕교과와 사회교과에서 이루어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정치·경제·윤리 교과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시민교육에서 헌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헌법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헌법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국내 인권교육의 동향

가.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은 이론적으로는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상으로는 주로 사회과(social studies)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법 교육(law education)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법 교육조차 국민들의 권리내용보다는 사회의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여 권위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으로 사회과에서 다루는 인권교육을 보면, 기본권 개념 및 인권 발달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다루는 수준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법 또는 정치 관련 영역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범주와 한계를 주로 다룬다. 세계사에서는 인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인권선언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과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쟁점 수업이 발견되지만 이 경우에도 인권을 위한 대안적 시각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현실적 절충을 시도하는 쪽에 머물러있다고 분석된다. 도덕과에서도 인권 내용이 새겨 되어 있지만, 인권을 방향성이 아닌 새로운 의무로서 부과하는 특징이 보인다.

이상의 교육과정 상의 제한된 인권교육을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보인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이나 사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활동이 덧붙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교실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많다. 참교육을 지향한다는 전교조에서도 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체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학교 인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이기규, 2004)

가. 시민단체에서의 인권교육

‘UN 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에서 인권교육의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나 국가인권기

구, 공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풀뿌리조직, 전문가협회, 관심 있는 개인들의 능동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제 프로그램·정부인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타 기관들이 이들 단체에 기술 지원 및 훈련, 시민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민간 사회단체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인권교육은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노력과 참여로 일정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허상수·최재훈, 2003) 지난 권위주의의 시기에 인권유린과 침해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민주화과정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신장을 위해, 특히 여성·장애인 등이 불리한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 현재 이들 시민단체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권리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과 헌신은 이들 부문의 인권교육이 유망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강화와 심화, 인권교육 담당자의 교육과 같은 내부적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교육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허상수·최재훈, 2003)

- 시민사회단체의 특성과 활동에 맞는 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 인권교육 강사 풀(pool) 제공
- 교육방법론 개발과 인권교육 강사의 교육과 재교육
-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과 연계 실시
- 인권교육 자료(kits, Resources) 확보와 제공
- 인권교육 평가 방법론 개발
- 인권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인권교육 예산과 교육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 수립
- 교육 대상자 모집과 홍보방안 개발

- 시민사회단체 간 유대 강화와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단체간의 네트워킹(networking)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 및 리스팅(listing) 구축
- 교육경험을 공유하고 정보와 자료의 교환과 인권교육 지식과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인권교육 담당자들 대상의 정기 워크숍(workshop)

번호	단체명	분야	프로그램명
1	군가협	자유권	군·경 의문사 및 폭력실태 근절방안 교육
2	인권실천 시민연대	자유권	경찰 대상 인권교육
3	다산인권센터	아동·청소년	인권평화학교 / 청소년 인권평화캠프 / 교사인권워크숍
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아동·청소년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
5	마들 창조학교	아동·청소년	인권아! 친구하자!
6	흥사단 청소년인권센터	아동·청소년	청소년 인권신장 및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 포럼
7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성적 소수자	'동성애 바로 알기' 강좌
8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적 소수자	대학 및 시민인권단체 강좌 /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장애인	장애우 인권학교 / 장애우 대학 / 장애체험순회교육
10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장애인 노동자 권리찾기 교실
11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	소수자 인권찾기를 위한 방송모니터 교실
12	한국언론재단	언론	인권분야 담당기자 전문연수
13	진보네트워킹센터	정보인권	정보화와 인권
14	피난처	난민	국제난민학교/ 자유터학교-북한자유이주민 통일학교
15	북한인권시민연합	난민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16	평화인권연대	평화	평화캠프

〈표 4〉 2004년 시민단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Ⅲ. 국내외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분석

Ⅲ. 국내외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분석

1. 국외 인권교육프로그램 분석

가. 국외 인권교육 프로그램 사례

(1) 미국의 FHAO(Facing History and Ourselves) 프로그램

FHAO는 과거의 부끄러웠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우리 자신을 평가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개발되었다.(Brabeck, Kenny, Stryker, Tollefson & M. Sternstrom, 1994)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름도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역사와 우리자신을 직면하기’ 가 된다.

‘역사와 우리자신을 직면하기’ 프로그램은 1994년 미국 전역의 350여개 중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이전까지의 인권교육은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부적절하고 지루하여 인권의식을 진작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인 ‘역사와 우리자신을 직면하기’ 가 개발되고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역사적인 인권유린 사례를 통해 인권을 배우자는 것으로,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유린 사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취해보도록 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즉, 학생들은 희생자 또는 희생양이 되어도 보고, 지도자방관자저항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면서 각각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편견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즉, 여기서 제공하는 활동들은 학생에게 하나 이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다른 사

람의 입장을 선택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한 인지적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접근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고는 하나 인권침해에 있어서 희생자나 희생양, 그리고 방관자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자, 끔찍한 비극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심리적인 건강을 해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인종차별에 의해 많은 사람이 대량으로 학살되어가는 과정을 필름으로 봄으로써, 오히려 우울감이나 심리적인 무기력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진작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심리적인 무기력이나 우울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이었다.(문용린, 1994)

(2) 일본의 Dowa 교육 프로그램

‘Dowa’ (同化)교육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인권교육 실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본의 부락(部落, Buraku)이라 불리는 지역에는 3백만에 이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데, 동화교육은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부락민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부락해방운동(Buraku Liberation Movement)은 ‘해방교육’ 또는 ‘이른바 동화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주류 동화교육에 저항하면서 동화교육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들은 부락민을 비롯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민주화의 전략으로서 ‘동화교육’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락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비판적 문해능력을 발달시키고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해방을 위한 능력(ability for liberation)”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동화교육을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날의 동화교육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부락해방운동은 교육과 더불어 시작하여 교육으로

끝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부락해방운동과 동화교육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동화교육은 부락민과 부락 아이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들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키는 것,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 등을 통해 부락민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시에 부락민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아이들에게는 부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상호 존중감을 키움으로써 부락민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성인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해독과 비판적 문해교육을 수행했다. 대부분의 부락민들이 학교에서의 차별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빈곤 등으로 인해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문자를 읽음으로써 세계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to read the world by reading the word)을 목표로 이들이 과거 삶의 경험에 기반하여 그들이 왜 학교에 갈 수 없었는지, 어떻게 차별받았는지, 문맹으로 인해 어떻게 고통 받았는지를 성찰하고 사회의 책임을 묻는 비판적 문해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했다. 부락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교에서의 차별 방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증진 등을 위한 활동도 계획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부락출신 아이들의 자발적 조직들이 결성되어 지역사회에 부락문제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학교에서도 부락문제의 역사와 현실이 교과과정 내에 포함되었다. 1953년 지역사회에서 동화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국 동화교육자협회’의 창립 이후, 교사들은 부락해방센터나 부락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부락 아이들의 취학률증가, 학교시설 개선, 무료 교과서 제공, 부락문제와 역사를 교과과정 내에 통합시킨 교과과정의 개발, 교재 개발, 동화교육의 영역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성공회대 인권과 평화위원회, 1998)

동화교육에 참여했던 부락 아이들은 동화교육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어렸을 땐 부모님이 그냥 입기만 했어요. 하지만 부락해방운동에 참여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를 키웠는지 이해하게 되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출신을 숨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해했죠. 이 운동에 참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의 존재를 숨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죠.”

동화교육을 고민하는 교육활동가나 교사들이 가장 크게 부딪힌 문제는 바로 “부락민에 대한 차별은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부락차별의 현실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건 너무 심각하고 거대한 문제군. 난 이런 심각한 문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는 무력감과 거부감을 가져다주기 쉬웠다. 이러한 고민에서 많은 교사들과 인권단체들은 참여적 방법론을 동화교육 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활동중심, 참여중심, 그룹 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학교 내 동화교육의 주된 과정은 그룹 활동(모둠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화교육은 교육의 과정 속에서 1) 학교 밖 아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키고 2) 취약집단, 차별받는 아이들의 삶과 경험, 느낌을 교육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고 표현하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실 내 모둠일기’ 쓰기, 현지답사(Fieldwork) 등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모둠일기’는 대표적인 동화교육의 방법론 가운데 하나인데, 교실에서 아이들이 모둠일기를 돌려쓰면서 자신들의 일상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둠일기에는 아이들의 학교 내 생활,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락차별, 학교 밖 가정이나 사회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이 빠곡하게 기술되었고, 이를 아이들끼리 돌려 읽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해나갈 수 있었다. 한편 학교 밖 비정규 교육과정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동화교육을 촉

진해나갔다. 부락민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패러디한 연극이나 공동 창작한 드라마 등이 지역사회를 돌며 상영하기도 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3) THRO 교육 프로그램

1996년 미국의 Cincinnati 대학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인종학살에 대한 세계재판의 문제와 인도의 반테러리즘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THRO(Teaching Human Rights On-line)의 특징은 인권교육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과 매체에 익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하여 국가 간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 연대의식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권문제를 지역적 해결을 넘어 국제적인 의사소통 망을 가지고 국제적 인권문제를 함께 토론하여, 인권과 관련된 여러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고 보편적인 인권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Howard Tolley Jr., 1998)

이에 대하여 정윤영(2003)은 온라인상에서 인권을 가르침으로써 인권교육의 국제적 연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권의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일 수 없으며,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에 있어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인터넷 망을 이용한 국제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수업에서 그 기대 효과가 크다 할 것이다.

나. 국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1) 교육대상의 발달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국외의 초·중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의 발달연령에 맞추어 다양한 하위활동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어든(Reardon, 1995)은 ‘인권과 평화교육’이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아동의 연령(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에 따른 발달

상태를 고려한 핵심적인 인권교육 교과과정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유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이해하기’ 등 인권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교육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구체적인 편견·불평등·빈곤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더불어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인권옹호를 위해 어떤 책임감과 의무를 지는지를 교육한다.(이승미, 2000)

국제사면위원회가 1996년에 제작한 ‘인권교육 파트너’ (Partners in Human Rights Education) 프로그램 또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대상인 아동에 맞게 총 24회의 역할놀이와 게임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1)인간의 존엄성 존중하기 2)규칙의 학습 3) 공평함이란? 4) 사회적 민감성 5) 공동체 6) 법 7) 인권을 활용하자 8) 편견과 맞서 싸우기 9) 정의란? 10) 평등 11) 훌륭한 정부 12) 잘못을 바로잡기 등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Ellie Keen(2004) 등이 개발한 『Bill of Rights in School: A Resource for Post-primary School』에서는 11세~14세 대상의 프로그램과 15세~18세 대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각각 9차시용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다. 둘 다 다루는 주제와 목적 및 내용은 비슷하나, 습득하는 활동기법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외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자의 발달연령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습득하는 활동기법 등을 달리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수 준	목 표	핵심개념	행위 목표	관련 인권 문제
유아기 -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 3~7세	- 자기존중 - 부모와 교사 존중 - 타인존중	- 자아 - 공동체 - 개인적 책임 - 의무	- 공평 - 자기표현/경청 - 협동/ 공유 - 소집단 작업 - 개별작업 - 원인/결과의 이해 - 공감 - 민주주의 - 갈등해소	- 인종차별 - 성차별 - 불공평 - 타인에 대한상해 (정서적, 신체적)

수 준	목 표	핵심개념	행위 목표	관련 인권 문제
아동기 - 초등학교 고학년 - 8~11세	- 사회적 책임 - 시민권 - 욕구와 필요, 권리의 구분	- 개인의 권리 - 집단의 권리 - 자유 - 평등 - 정의 - 법규 - 정부 - 보안	- 다양성의 존중 - 공평 - 사실과 의견의 구분 - 학교 혹은 공동체 내에서의 봉사 - 시민적 참여	- 차별 / 편견 - 빈곤 / 기아 - 부정의 - 자민족중심주의 - 수동성
청소년기 - 중등학교 저학년 - 12~14세	- 특정화 된 인권에 대한 지식	- 국제법 - 국제 평화 - 세계 발전 - 세계 정치와 경제 - 국제 생태계	-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 증거에 의한 관념의 정당화 - 연구 수행/ 정보수집 - 정보의 공유 - 공동체적 봉사와 실천	- 무관심 - 냉담 - 냉소주의 - 정치적 억압 - 식민주의 / 제국주의 - 경제적세계화 - 환경파괴
청년기 - 중등학교 고학년 및 성인 - 15~17세	- 보편적 기준으로 서의 인권에 대한 지식 - 개인의 의식과 행위 수준에서의 인권의 통합	- 도덕적 포섭 / 배제 - 도덕적 책임 / 교양	- 시민조직에의 참여 - 시민적 책임의 완수 - 시민적 불복종 - 공동체적 봉사와 실천	- 대량학살 - 고문 - 전쟁범죄

〈표 5〉 UN 인권을 위한 고등판무관실에서 작성한 인권교육 개념도

(2) 교육대상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을 중시

국외의 인권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대상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2003년에 유엔에서 발간한 『ABC : Teaching Human Rights』 자료에 의하면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감정이입과 도덕적 상상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평등·자유와 같은 이념들을

실제 현실속의 경험·권리·책임 등과 같은 일상적인 삶과 연계하여, 학습자의 인지능력·비판능력의 개발 및 정서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대상자로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을 통해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외의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시청각 매체의 활용과 학습자의 체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험중심, 활동중심 교육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활동 뿐 아니라, 집단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토론활동, 예술활동, 게임활동 등을 두루 포괄하여 교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참여의 원리는 인권교육의 방법론으로서 일찍이 강조되어 왔기에 국외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론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인권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경험과 참여의 방식에서 다소의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인지적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지식습득과 비판능력을 길러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FHAO(Facing History and Ourselves)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경험과 참여는 영상물이나 자료와 같은 매체를 통한 경험과 교육대상자들 간의 토론을 통한 참여이다. 한편으로 행위중심적 관점에서 인권친화적 행위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앞선 사례에서 Dowa 프로그램을 보면 연극이나 공동 창작 드라마, 그리고 현지답사(Fieldwork)와 같은 방식 등을 통해 직접적인 체험을 유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인권이 전지구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각 나라마다의 지역적 현실이 반영되는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인권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권교육에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로, 인권의 고양은 문화적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사회 규범 및 문화가 보호되고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적 인권의 중요 내용 중의 하나인 소위 원주민의 권리(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는 인간이 자신의 전통과 문화적 양식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실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유럽은 인권체제의 모범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의 문화적 고유성 유지에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미주인권체제의 경우 아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지극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 상이한 사회적 전통을 지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다양성은 지역적 인권체제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강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홍성필, 1996)

즉, 단순히 지역적 문제를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다양성과 사회규범 등에 대한 존중과 보호까지도 인권교육에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국외의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지역적 문제에 충실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잘 반영된 것이 캄보디아에서 실시되었던 IPS기법을 활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다.

캄보디아의 IPS를 활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90년대 초반, 캄보디아가 마침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행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가운데 캄보디아를 원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던 ‘UNTAC(UN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인권운동사랑방, 2000)

UNTAC의 IPS를 활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국제인권기준과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이 부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공개적으로 털어놓도록 격려를 받았다. 모든 여성들이 폴포트 정권 하에서의 고문의 경험이나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고용주의 노예와 다름없는 대우, 교실 내 성차별 등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후 여성들은 크메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아내, 어머니, 딸, 노동자라는 각각의 역할 속에서 사회가 여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대해 여성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토론을 벌였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삶의 경험을 적극적인 교육의 자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인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외감을 줄여나가도록 도왔다. 경험의 공유는 참가자들 사이에 강력한 연대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2. 국내 인권교육프로그램 분석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여러 인권단체 등이 인권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현재, 국내에도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많지 않으며, 외국프로그램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프로그램끼리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권교육 프로그램 중 6편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인권텔레마토론수업,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초·중·고 인권교육 길라잡이,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인권 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인권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인권교육의 목표로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인권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객관적 시각에서 인권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를 살펴보았다. 셋째, 어떠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실현하고 있는가? 즉, 인권교육의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넷째,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기에 적합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학교 안에서 수행하기 적합한가? 학교 밖에서 수행하기 적합한가?’ 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가. 인권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분석

(1) 인권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분류

인권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일반적인 목표와는 별개로, 교육학적 입장에서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여러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우선,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인권침해 사례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발휘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의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거쳐 옹호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지발달론적 관점(또는 인지능력 중심)’에서 인권교육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지발달론적 관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인권교육의 모형이다.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무지의 반성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때,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인지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지능력 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갖는 한계는 그 효과의 실효성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고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이 실제의 상황에서 인권 친화적 행위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고능력의 발달이 실제의 상황에서 필연적 인권옹호 행위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지능력 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고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인권 친화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을 길러내지 못했다(박상준, 2002).

다음으로 인지능력 중심과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활동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관점을 달리 표현하면 행위성향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상준(2002)은 행위성향(行爲性向)이란 인권 친화적 행위를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체득된 행위의 경향성을 의미하며, 학생들에게 행위성향을 습득시킨다는 것은 실제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인권 친화적 행위를 실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활동중심(행위성향 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단지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사고능력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권 친화적 행위성향을 체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 능동적이며 그들의 경험 또한 몸으로 느끼는 직접적인 것이어서, 인권교육의 원리로서 경험과 참여에 충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관점과는 다른 각도에서 인권교육을 접근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시민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한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들 및 원리들에 헌신할 수 있는 참여적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교육에 있어서 인권교육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로서 인권을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서 가르친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자칫 인권교육이 시민교육의 하위내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바람직한 시민이 반드시 인권 친화적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2) 대상 프로그램 분석

①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 : 딜레마 토론은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Blatt이 처음 사용한 이래 여러 연구들에 의해 도덕적 판단력 발달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를 이승미(2000)가 1주에 1회씩 6주에 걸친 인권 딜레마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수업한 결과, 인권에 대한 태도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여기서 분석한 프로그램은 이승미(2000)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미희(2004)가 개발한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권문제가 게재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인권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인권감수성), 그 상황에서 인권 옹호적으로 가능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으며(인권추론능력), 인권가치와 경쟁하는 여타의 가치들보다 인권적 가치를 우선시하도록 동기화하며(인권가치에 대한 동기화), 개인의 성격상의 여러 가지 방해요인, 즉 의지나 주의집중·용기·자아강도 등의 부족이나 결핍을 극복하고 인권옹호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인권행동 실천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한 전형적인 인지능력 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다.

인지적 관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권관련 사태에 대한 지각 및 해석 경험을 제공하여 인권감수성을 발달시키고, 토론촉진용 질문과 같은 피드백을 활용하여 인권 옹호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은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②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활동했던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자신과 가까운 인권의 내용들을 스스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내용 들도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알아가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인권에 관한 이해활동, 가족 내의 성차별 문제에 한정하여 가정생활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활동, 학교생활에서 침해당하는 인권, 보장받고 있는 인권, 내가 침해하는 인권 활동, 자신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해보고 현실 속에서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토론 및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활동 모색, 나아가 행동화 활동, 학생들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의 흥미 있어 하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여 스스로 어떤 입장에 서야 할지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활동, 다양한 국제 사회 속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당한 인권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여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시민의식 육성 활동 등과 같은 직접적인 활동들을 통해 인권친화적 행위를 습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이 프로그램은 행위성향 중심의 관점에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권친화적 행동을 익히게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다양한 놀이와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친근한 예사그림 등은 경험과 참여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이 너무 강조되어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비판적 사고능력이 간과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③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인권 교육 : 이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충청남도 교육청이 함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재량활동 수업용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그 내용은 크게 민주시민의식과 인권존중의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연관 지어 놓고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은 민주시민의식이 우선시 되고 인권의식은 그 하위의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서로가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분리하여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선거참여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제1세대 인권의 문제로서 인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민주주의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민주시민의식과 인권존중의식 두 부분 모두에서 다뤄져야 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이해·자세·사고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한 인지능력 중심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단 원		주 제
1. 민주 시민 의식	가. 민주적 절차와 바람직한 토론 문화	1) 갈등, 올바른 해결 방식은?
		2) 우리의 토론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3) 토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자발적 참여	1) 고발정신, 사회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가?
		2) 선거 참여, 국민의 민주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가?
		3)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NGO활동은?
	다. 공동체 의식	1) 집단 이기주의, 그 해법은 무엇일까?
		2) 2002 월드컵 신화, 시민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까?
		3) 작은 배려와 사랑, 사회 발전에 힘이 될까?
	라. 정직과 준법	1) 정직한 기업 운영,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줄까?
		2) 우리가 만든 법, 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까?
		3) 양심 병역 거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단 원		주 제
2. 인권 존중 의식	가. 인권의 의미	1) 차이와 차별, 어떻게 구분되나?
		2) 획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나. 가정 및 학교 생활 속에서의 인권	1) 인권 보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필수적인가?
		2) 집단 따돌림 문제, 그 해결은 없는 것일까?
		3)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다. 사회생활 속에서의 인권	1) 사회 경제적 약자, 그들이 겪는 인권 문제는?
		2) 북한 이탈 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는?
		3) 동화 및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인권 문제는?
	라. 국가 및 국제 생활 속에서의 인권	1) 전쟁과 빈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2) 사형제도, 그대로 존속해야 하는가?
		3)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표 6> 민주·인권 교육의 내용 구성 체계

④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 : 이 프로그램은 앞서 제시한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인권교육’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중학생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이나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크게 인권의식과 생활 법률 속 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선 중학생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연장선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중학생 프로그램보다 인권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의 각 단원별 학습 주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의 재량활동과 토론 자료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동의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지발달이론에 따른 학습자의 인지능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이 인권침해사례와 인권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단 원		주 제
I. 인권 의식	1. 인권의 의미	가. 차이와 차별, 어떻게 구분되나? 나. 획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다. 과학 기술과 인간의 존엄성
	2. 가정 및 학교생활과 인권	가. 교육권과 인권의 줄타기 나. 학생의 신체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인가? 다. 친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 사회 생활과 인권	가. 안락사, 존엄사 허용할 것인가? 나.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다. 성차별, 역차별?
	4. 국가 및 국제생활과 인권	가. 사형제도 이대로 존속해야 하는가? 나.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해결책은 없는가? 다. 전쟁 포로의 인권 문제는?
II. 생활 법률 속 인권	1. 개인 생활과 법	가. 내집은 내가 지킨다. 나. 아버지! 딸도 자식입니다. 다. 미성년자라서 불편한가요? 라. 가족의 위기, 어찌해야 할까요?
	2. 사회 생활과 법	가. 장수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나.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었어요. 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라. 성폭력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3. 국가 생활과 법	가. 미란다는 음료수 이름인가? 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다. 뺑소니를 당했어요. 라.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표 7〉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 각 단원별 학습 주제

⑤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초·중·고 인권교육 길라잡이(고등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를 중심으로) :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학교교육 현실에 맞게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의 초·중·고 교과서에서 인권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그것을 교과과

정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토론학습·협동학습·체험학습·ICT 등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자극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인성과 고등정신 기능 및 창의성을 개발하고 인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지니게 하도록 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토론학습·협동학습·체험학습·ICT 등은 인지발달이론(피아제·비고츠키)과 다중지능이론(가드너, 샴페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인지능력에 중점을 인지적 관점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과와 사회과 영역의 프로그램들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세계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이들의 교과목의 교육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다.

⑥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 강순원·구정인·김중수·배민아·이원표 등이 공동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인권친화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행위성향 중심의 관점에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위성향 중심의 관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활동중심의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인지능력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분석과 수용의 단계가 그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의식을 주어진 상황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을 찾아내고

인권교육과정	목 표
마음을 열고 서로 알기	노출과 만남
인권으로 만나는 세상	물음과 깨달음
	분석과 수용
	대안과 적용
인권 실현을 위해	반성과 결단

<표 8>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의 교육과정

분석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서적 깨달음을 논리화하고 신념화하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위성향의 인권교육에서의 간과하기 쉬운 인지적 요소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인지적 관점과 행위성향적 관점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나. 인권교육의 내용에 따른 분석

(1) 인권교육의 내용에 따른 분류

인권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프로그램을 1) 인권문제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한 프로그램과 2) 인권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3) 리더의 시각으로 인권을 바라 본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인권문제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해 그 내용에 있어 인권의 피해자소외된 자·사회적 약자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권의 일차적 관심이 이들 피해자에게 있고, 인권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권리중심이거나 지나치게 급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와는 달리 인간존중·자유와 평등·평화 등과 같이 인권이 지니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피해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를 하려고 하지 않고 가급적 가치중립적으로 인권문제를 접근하려고 한다.

단 원		활 동 명
세 걸음 / 인권의 눈으로 세상보기	1. 가정 생활과 인권	활동 1 동화 속의 성차별 활동 2 드라마 속의 성차별 활동 3 가사 노동 분석 활동 4 결혼 손익 계산서 활동 5 평등 가족으로 가는 길
	2. 학교 생활과 인권	활동 1 학교의 하루 표현하기 활동 2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생활 1 활동 3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생활 2 활동 4 인권 침해 해결 방안 토론 수업
	3. 지역 사회와 인권	활동 1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 활동 2 인권의 눈으로 본 우리 동네 활동 3 우리 동네 무엇을 어떻게 고칠까? 활동 4 인권이 꽃피는 우리 동네
	4. 국가와 인권	활동 1 작은 인권 책 편집회의 활동 2 작은 인권 책 만들기 활동 3 작은 인권 책 출판 기념회
	5. 국제 사회와 인권	활동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인권 1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활동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인권 2 - 다큐멘터리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래?' 활동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인권 3 -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활동 4 이주 노동자의 인권 1 - 차별의 꽃 그리기 ① 활동 5 이주 노동자의 인권 2 - 차별의 꽃 그리기 ② 활동 6 이주 노동자의 인권 3 - '취재 파일 4321 - 연수생인가, 노예인가'

<표 9>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제3장의 내용 구성

(2) 대상 프로그램 분석

우선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제3장 ‘인권의 눈으로 세상보기’는 현실에서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의 눈은 인권 피해자(또는 인권에서 소외된 자)의 눈을 말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장의 가정생활과 인권에서는 여성, 학교생활과 인권에서는 학생을 이미 차별받는 존재(인권의 피해자, 소외된 자)로서 설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인권에서도 위안부 할머니와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인권의 피해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면서 일방적인 설정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주입하고 자칫 인권에 대한 반감이나 왜곡된 시각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인권 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초·중·고 인권교육 길라잡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학교에 적용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들로 인권적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중점으로 다루고, 인권의 피해자(소외된 자)에 대해서 인권의 침해사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다. 인권교육 방법 및 장소에 따른 분석

(1) 인권교육의 방법 분석

분석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교육 방법을 보면 토론과 영상매체들을 활용한 시청각 자료 활용 후 활동, 역할극, 사례학습,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하였다. 이는 인권에 관한 지식 전달의 일방적인 인권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과의 쌍방향적 인권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에 관한 태도·의식·가치들을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인권감수성을 키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들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인권 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초·중·고 인권교육 길라잡이’와 같은 인지능력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토론·시청각자료 활용·브레인스토밍·탐구학습 등과 같은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반면,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와 그 외 인권시민단체들에서 개발된 행위성향을 강조한 프로그램들은 역할극·사례학습·현장방문 등 직접적인 체험위주의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프로그램	교육 방법	교육 지향점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인권 교육,	토론학습, 협동학습, 탐구학습, 강의, 발표와 질의	인지능력 중심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	토론학습, 협동학습, 탐구학습, 강의, 발표와 질의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	딜레마 토론, Brain storming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초·중·고 인권교육 길라잡이	토의학습, 협동학습, 포트폴리오 학습, 체험학습, ICT 활용학습 등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Brain storming, 그림·사진·만화·콜라지, 역할극, 미디어매체(다큐, 영화, 드라마, 동화 등)를 활용한 활동, O·X퀴즈, 토론 등	행위성향 중심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Sing along, 레크리에이션, 공동체 놀이, 전시, 음악, 인간관계 훈련, 대화, 생각그물, MIE, NIE, 감수성 훈련, IIE, 주제관련 자료, 강의, 공동조사, 연구 발표, 토론, Brain storming, 상황극, 창의적 활동, 모의국회(법정), 역할극, 도구 이용 활동, 캠페인, 퍼포먼스 등의 문화예술적 표현, 점검목록에 의한 평가, 느낌 정리	감성 중심

<표 1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방법 분석

(2) 인권교육 장소(학교적합성) 분석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 적용이 가능한가는 크게 환경적합성과 내용적합성의 두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적합성은 현재의 학교 교육환경에 맞게 설계되었는가를 말한다. 즉, 현재의 학교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개별 단위 프로그램의 실시시간이 1시간이내이어야 하고, 대상인원은 30~35명 정도이고 실시공간도 학교교실과 같은 크기의 실내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사의 수도 많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면 분석대상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할극·캠페인·퍼포먼스 등과 같은 학생들의 준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활동, 현장방문과 같은 외부활동 등의 체험중심 활동 등은 입시교육이 중시되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내용의 적합성이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를 말한다. 사실 우리의 학교는 보수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급진적이거나 지나친 권리 중심의 내용은 학교 현장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와 그 외 인권시민단체들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인권의 피해자와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학교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프로그램들이다.

IV. 연구개발 상의 논의들

IV. 연구개발 상의 논의들

1. 인권교육의 정의는 무엇인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과연 인권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은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이를 위하여 인권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상당한 논란이 생겨났다. 그 핵심적인 쟁점은 ‘인권을 교육하는 것인지, 인권을 통한 교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쟁점이 생기는 이유는 학교 밖에서 행하는 인권교육이 “인권의 교육”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반면, 막상 학교로 들어오니 “교육 속의 인권”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군대, 교도소, 경찰에서 인권교육은 인권 수칙의 교육에 가깝다. 인권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직접적으로 주지하는 교육이 대부분인 이유는 인권교육이 대부분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학생 자신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인권에 대한 폭넓은 사고와 인권 세상을 열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교육이다.

만약 학교의 체제 속에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16-17시간, 혹은 32-34시간 정도의 기본 차시를 할당받지 않는 한, 독립적인 교과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긴 시간을 인권 수칙의 교육이라는 좁은 개념에 한정하여 반복하다 보면 학생들은 곧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더욱이 사회과 등 기존의 교과 교육과의 관련성, 학생 개인의 선행 교육 경험과 연관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 인권교육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인권을 교육시키는 것”(the education of human rights)이라기보다는 인권을 통해 교육하는 것(the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라는 관점을 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해 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권적 요구를 반영하도록 직접적인 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 인권수칙 매뉴얼을 보급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절도, 언어폭력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을 개선하도록 직접적으로 행동 수칙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교사로 하여금 학생 인권을 지키고 나아가 학생간 인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2. 학교 인권교육의 핵심적 목표는 무엇인가?

학교의 인권교육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위 목표 영역을 가지게 된다.

- ①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 ② 인권에 대한 가치와 신념
- ③ 인권 상황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 ④ 인권 기준에 합당한 행동과 실천

이러한 목표들은 이론적 구분으로서 실제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목표이다. 인권적 실천이라는 가장 최상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영역으로서 지식과 가치, 의사결정 능력, 결단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앞에서 말하는 인권교육의 세부 목표일뿐이다. 그런데, 실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의사결정 및 실천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지식과 가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 및 실천은 보다 고도의 교수 설계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실제의 상황과는 다르다. 프로그램 설계자는 사회 현실에 가장 적합한 축소 환경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예비적 사고나 모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가끔 실제 상황에 투입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전이라기보다는 예비적 활동에 불과하다. 프로그램 설계자가 이러한 예비 활동을 위한 상황을 구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전문 활동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교수 설계 프로그램들은 지식과 가치 영역의 목표에 치중하게 된다.

둘째, 교수 설계자의 인권교육 목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다. 인권교육의 목표가 인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인권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주입(indoctrination)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교수 설계자가 인권에 대한 열정이 클수록 이러한 낮은 단계 목표에 한정하게 된다. 실제 본 프로그램 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소수 비판자들은 인권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인하여 왜 인권에 대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가하고 반문하였다.

인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인권에 대한 열정이 인권교육의 핵심적 목표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열정으로 모두 채워지지 않으며, 인권이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근본 가치이기도 않다. 더욱이 인권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며, 인권의 하위 권리들 사이에 무엇이 우선하는 것인지 상충되기도 한다. 실제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관점이 존재한다. 우리 학생들은 이 속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인권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을 타협하고 절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3. 학교 인권교육의 정당한 관점은 무엇인가?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은 결코 정태적인 개념은 아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지역과 집단을 넘어 더

욱 확고한 보편적 권리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진화를 촉진하는 것은 분명 피해자적 관점에서 인권 개념을 확장하고 보편화하려는 경향성이다. 도시보다는 농촌과 광산으로, 자본에서 노동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장되었던 인권이 최근에는 아동과 이주 노동자, 원주민 문화 보존에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은 기존의 인권이 정착되고 새롭게 대두되는 피해자들의 문제가 인권의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이러한 진화적 관점을 인정하려면 마땅히 우리 학생들도 피해자적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이 피해자적 관점에 서도록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첫째, 학생 자신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사회에서 성인들로부터, 교실에서 급우들로부터 언제든지 인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당장 인권교육이 자신에 관련된 것이라 자각하게 되고, 다른 한 편으로 나의 친구가 그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차원의 연대를 기하게 한다.

둘째, 인권의 진보적 관점을 수용하게 된다. 현재의 처지에서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없고 자신이 처한 경험에서 관찰하기 힘들지라도 끊임없이 세계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여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 오직 현재의 시점에서 승인된 것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인권 개념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인권교육이 피해자적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피해자적 관점이 인권교육의 전체는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국민 공통 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 체제에서 편향적 교육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교수 설계자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편향되지 않다고 항변하더라도 국민들이나 일반 학교 구성원들이 이를 편향된 것으로 인식하면 더 이상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주어진 인권교육 환경 속에서 작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피해자적 관점 대신에 채택될 수 있는 다른 관점은 바로 리더의 관점이다. 리더의 관점이란, 상충하는 인권 갈등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

지를 탐구하고 이를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인권 리더들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무한한 신념이 있으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 철저한 자기 제어 능력을 갖는다. 인권 리더들은 주위에 자신의 동료나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인다. 인권 리더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인권을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이해 근거로 삼지 않으며 현재하는 인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프로그램이 리더의 관점에 입각한다고 표방하였을 때, 비판자들은 리더의 관점은 “인권의 피해 상황에 대한 거리 둠”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말한다. “인권 상황의 개선이 급박한 사람들에게 좀더 멀리 떨어져 합리적인 사고를 하세요.”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이며, 참여자로서 체험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갖는 피해자적 경험을 직면하게 하는 것은 인권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많은 논의의 결과, 이 프로그램은 양자의 관점을 절충하기로 하였다. 인권 피해에 대한 공감의 바탕 위에서 인권 개념의 진화적 관점을 수용하고, 시대 변화 속에서 언제나 균형점을 이동한다는 전제 아래 인권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에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4. 학교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앞에서 피해자적 관점을 강조하는 비판자들은 왜 본 프로그램 교수설계자들이 학교의 반인권적 상황에 눈을 감는가 물었다. 학생들이 당장 학교의 부당한 규정과 교사들의 반인권 행태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학교의 구제도 매우 적은 현재의 상황을 학생들이 직면하도록 설계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일종의 도덕적 결벽 상태를 강조하는 듯하다. 한 마디로 인권교육 교수설계자들이 학교

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눈을 감게 되면, 학생들 또한 세계의 반인권 상황에 둔감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학교의 두발복장 규정이 지금 얼마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교실에서 토론을 전개하고, 교사들의 심각한 언어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에 대해 본 프로그램 설계자들은 “본 프로그램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이지 인권운동 프로그램은 아니다.” 고 주장하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학교 교실에서 일반 교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데, 교실과 교사의 반인권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맞지 않다. 다만, 현존하는 학교 인권 문제들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반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는 정도는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학교 실정에 맞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5. 북한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없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이 없는 점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입장을 내놓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을 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프로그램은 “인권과 이해관계” 라는 단원에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학생들에게 토론하는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민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미국과 국내 보수 집단이라는 점에서 편향된 시각이 반영될 것을 우려하였다. 북한 인권도 북한 내부의 자주적 선택이라는 다원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권 이전 식량

문제 개선이나 민족 통일이라는 중첩된 문제 속에서 바라보아야 본다는 입장도 피력하였다.

본 프로그램 설계자들은 바로 이 점이 바로 북한 인권을 본 프로그램에 다루는 목적임을 설명하였다. 인권적 가치 이외에 존중되어야 할 가치들은 많으며,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인권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북한 인권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6.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준거로 우리나라 헌법이 적절한가?

비판자들이 본 프로그램이 지나칠 정도로 헌법적 테두리를 고집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프로그램 설계자들은 이를 매우 신선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였다. 그만큼 학교의 인권교육은 헌법적 준거를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진보적 교사들도 헌법이 규정한 인권이 기본이고 최고 가치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형편이다.

사실 헌법 자체로도 글로벌리제이션의 추세를 반영하는 데 크게 미흡하지 않다. 승인된 국제조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나 아동, 문화 다양성 등 새로운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데 큰 장애는 없다. 그렇지만, 비판자들이 새롭게 제기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국내적 시각보다는 세계 보편적 시각에서 인권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헌법 규정 속 인권을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세계 인권 선언, 아동 권리 협약 등의 인권 규정을 함께 학습하도록 배려하였다.

7. 인권교육도 인성교육의 기법을 차용하는 것이 좋은가?

본 프로그램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이 결코 이론적 근거, 역사적 문헌이나 인권 선언 규정 자체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결국 자기 내면의 철저한 자각에서 출발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만약 선언만으로 내면화하면 주어지는 관념에 의해 생각이 지배되어 실제의 행위자들이 다양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기계적으로 관념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인권이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인권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면 또 다른 억압 기제가 되며, 왜곡이 된다.

본 프로그램은 인간 존엄성은 결국 “내 존재의 존엄성, 내 삶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이끌어내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존엄성, 생명 집단에 대한 존엄성으로 의식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자기 존중감을 이끌어내는 인성교육의 방법을 인권교육에 사용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이 인성 교육적 방법을 널리 사용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동안 발달된 “내면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기법을 인권교육에도 차용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기법의 풍요로움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비판자들은 이에 대해 생각이 달랐다. 인성교육은 기존 가치를 내면화하고 학생들의 비판 의식을 잠재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인성 교육은 반인권적 상황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현명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비판을 통한 구조 개혁보다는 수용을 통한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함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인권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보인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이 인성교육 방법론을 사용한다 하여 일부 도입 과정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프로그램 전체가 그러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과학 탐구 모형, 가치 탐구 모형,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등 다양한 교수 기법이 차용되고 있다. 단지, 초기 인간 존엄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8. 학교 인권교육이 과연 창의적 재량시간에 활용하는 교육 내용으로 한정할 것인가?

본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학교의 K-10 단계의 창의적 재량시간에 사용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되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면 이 시간에 과목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50분을 1차시로 하며, 16차시를 한 학기로 하고, 32차시를 1년으로 보는 학교 주기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개발 활동이나 교과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지나치게 학교 재량시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생동감을 잃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50분의 제약을 지켜야 하며, 학교 공간이라는 환경 제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비판자들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려면 처음부터 교실용과 캠프용으로 나누어 개발되어야 하고,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등 다양한 모듈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은 초기 입장을 견지하였다. 일단 하나의 목표에 맞추고 이를 다른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개별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짧은 개발 기간 및 개발 비용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9. 학교 인권교육의 범주와 계열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의 프로그램이다. 각급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선행 교육과정과 연속되면서도 확산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그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의 범주와 계열성 확보를 위한 사전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 설계자들도 이를 충

분히 참조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등학교 프로그램부터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관계로 선행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계열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계열성을 만족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선행 연구에서 주어지는 범주와 계열성 요구가 실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대부분 범주와 계열성이 개념 위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탐구 모형이 아닌 활동 모형으로 프로그램을 조직할 경우 잘 맞지 않는다. 활동 모형은 논리적 적합성보다는 통합적 완결성을 더 중요한 내용 선정 근거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문과 예술의 자유라는 개념을 가르쳐야 할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활동 중심 수업 모형에서는 만약 이 개념이 학생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고 실제 활동으로 연결이 어렵다면 사상의 자유 등 다른 개념을 찾아 적합성 여부를 따진다.

만약 통합적 완결성만을 강조할 경우 학생들은 인지 지도(地圖)상의 중요한 맹점들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큰 의미의 논리적 타당성은 찾아나간다. 예를 들어,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개별적인 하위 개념들은 건너뛰더라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포괄적인 상위 개념들은 밟아나가고, 필요한 경우 전체 인지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활동 중심 프로그램이 갖는 인지 지도상의 허점은 크게 줄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결국 계열성 대신에,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활동 중심 내용 범주를 인간 존엄성, 공동체, 진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저항권, 관용, 연대, 가치 탐구, 의사결정, 실천 등의 14개 개념을 설정하여 배치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만들어진 단계가 내 안의 하늘 찾기, 헌법 속의 인권 규정, 현실과의 대화, 원탁토론 “어우”, 소시오드라마 “인권”,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의 5 단계이다.

V.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V.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목표, 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목표

이 프로그램은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진다.

- ◎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이를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과 행동의 원천으로 삼도록 한다.
- ◎ 인간은 끊임없이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해왔으며, 지금도 권력과 자본, 무지와 편견 등으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진화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 ◎ 우리 헌법 속에 보장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르는 책임과 의미를 이해한다.
-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우선 배려할 줄 알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실현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 ◎ 교실과 가정, 학교, 직장, 국가 등의 공동체 생활을 인권의 집합체로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직면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는다.
- ◎ 집단의 결속을 넘어 세계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와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생명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총 34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단계, 5개의 본 단계, 정리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차시당 50분 동안 진행된다. 단계별 주제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원	주 제	내 용
도입 (1H)	사람, 인권, 인권교육	내가 알고 있는 인권의 개념을 객관화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를 놀이를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이해한다.
1 (5H)	내 안의 하늘 찾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하다. 사람이 얼마나 존엄한지 사람 마음속에서, 옛 문헌 속에서, 인권을 향한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
2 (5H)	헌법 속의 인권 규정	우리 헌법은 인권을 지키려는 국민적 약속이다.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이러한 인권을 어떻게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3 (5H)	현실과의 대화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인권들이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자 우선 원리, 배려의 원리, 타협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 원칙을 내면화해 본다.
4 (5H)	원탁토론 “어우”	『어우』 “어려운 이웃 우선”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인권 차원에서 규명해 본다.
5 (5H)	소시오드라마 “인권”	인권 침해의 상황을 극으로 꾸며 직접 몸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인권 문제로 인한 갈등을 살펴보고 인권의 문제를 내면화한다. 이를 통해 인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권 보호·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6 (5H)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인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름다운 인권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탐구해 보도록 한다.
맺음 (1H)	인권 100%를 향하여	프로그램을 종결하면서 그간의 소감을 나눈다. 특히 인권 존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각오를 밝힌다.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도 논의한다.

3. 프로그램의 차시별 흐름

단계	차시	차시명	모 들	내 용
도입	1	사람, 인권, 인권교육	-인권 개념 표현하기 -인권교육 목표 표현하기 -인권교육 프로그램 흐름알기	내가 알고 있는 인권의 개념을 객관화해 보고나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진행 흐름을 이해한다.
내 안의 하늘 찾기	2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	-내가 생겨나기까지 -만약 내가 없다면 -소중한 나와의 만남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온 우주가 작용했음을 체험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고백한다. .
	3	존엄의 눈으로 대면하기	-존엄의 눈으로 대면해 보기 -서로에게 맞절하기 -나의 인간 존엄 선언	존엄의 눈으로 친구들의 존엄함을 서로에게 들려주고 맞절로써 그 위대함에 예를 표현해 본다.
	4	인권을 향한 인류의 노력	-가자! 바스티유로. -세계 노동절의 유래 -I Have A dream	인권을 향한 인류의 노력에 중요 계기가 되었던 사료들을 살펴보면서 인권 확장의 의지를 드높인다.
	5	한반도에 핀 인권의 꽃	-사람이 곧 하늘 -영원한 청년, 전태일 -광주의 함성	우리나라에서 인권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계승 의지를 드높인다..
	6	우리의 위대한 약속들	-낭독 "세계인권선언문" -대한민국 헌법 -인권 실천 강령 만들기	조별로 각종 인권선언문을 분석하고, 그 공통점을 추출한 후, 실천 가능한 교실 인권강령을 함께 만들어 본다.
	헌법 속의 인권 규정	7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헌법속의 자유권 조항 -자유 억압 지옥 체험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8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헌법속의 평등권 읽기 -차별과 차이 -차별경험 공유하기	차이와 차별의 개념 구분을 통해 헌법이 금지한 차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여러 경험들을 공유한다.
9		삶의 마지노선에 서서	-빈곤아동과 사회권 -이주노동자의 삶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근로조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떤 조건이 실현되어야 할까? 빈곤아동, 이주노동자, 청소년 근로자들의 삶을 통해 사회권의 의미를 이해해 본다.
10		더 많은 권리를 위하여	-참정권과 청구권 읽기 -가상 청소년 공화국 -만약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헌법 속의 참정권과 청구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권리 보장을 위해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본다.
11		국가긴급권과 국민저항권	-국가긴급권과 국민저항권 -10월 유신이 다시 온다면? -저항권과 관용	헌법 속의 국가긴급권 규정과 국민저항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아울러 저항을 하는 집단에 대한 관용의 의미도 살펴본다.

(계 속)

단계	차시	차 시 명	모 들	내 용
현실 과의 대화	12	전쟁과 인권	- 이라크 전쟁과 인권 상황 탐색 - 전쟁 중 인권 원칙 탐색 - 비폭력 무저항 정신의 재음미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해보고 비폭력 무저항 정신의 숭고함을 다시 새긴다..
	13	인권과 이해관계	- 인권 이슈속의 이해관계 찾기 - 이해관계 뛰어넘기 - 북한인권과 이해관계	인권 원칙이 현실에 맞는 순간 이해관계라는 암초를 만나게 된다. 이해관계를 넘어 어떻게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본다.
	14	인권에서의 다수와 소수	- 소수자의 아픔 찾기 - 소수자 아픔 공감 - 소수자에 대한 연대의식	다수의 권력이 인권의 개념을 확정짓는 순간 소수의 소외가 발행한다. 과연 민주주의의 국가는 소수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15	차별의 원인으로서는 편견	- 동화 속 성차별 - 상관론 콤플렉스 테스트 - 양성 평등 이미지 그리기	인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다. 이를 스스로 어떻게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탐구한다.
	16	청소년으로서 나의 권리	- 아동권리 협약 읽기 - 피해자 경험 나누기 - 가해자 반성 나누기	청소년들이 놓여진 반인권 상황을 분석해보고, 우리끼리라도 먼저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다.
원탁 토론 “어우”	17	우리 안의 어려운 이웃	-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 약자 존중의 이유 - 사회적 약자 빙고 게임	『어우』란 “어려운 이웃을 우선”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빙고 게임을 통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이 누구인지 찾아본다.
	18	너와 나, 그리고 우리	-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 그들과 나의 거리 - 소감나누기	지구를 100명의 마을로 가정할 때,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도록 한다.
	19	선물을 준비하자	- 사회적 약자 대변하기 -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들 - 사회적 약자에게 선물하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어떤 인권의 보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그것이 지켜지기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
	20	평등교실, 평등세상을 위한 원탁토론	- 함께 준비하기 - 대표가 모둠의 의견 대표하기 - 실천을 위한 결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원탁 토론 과정을 통해 주장을 표현하고 널리 알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21	토론 결과 실천하기- “어우 실천”	- 개인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실천 계획 세우기 - 힘을 합쳐 실천하기	개인의 실천이 더 좋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가져옴을 깨닫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계 속)

단계	차시	차 시 명	모 들	내 용
소시오 드라마 “인권”	22	소시오드라마 워밍업	- 소시오드라마의 이해 - 인권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 소시오드라마 워밍업	소시오드라마의 의미, 방법을 배우고 인권 문제를 드라마로 잘 표현하기 위한 워밍업을 한다.
	23	모둠별 주제 및 상황 설정	- 인권침해 상황 그리기 - 개략적 스토리보드 짜기 - 역할 정하기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사례를 중심으로하여 개략적인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역할을 배정한다.
	24	모둠별 연습	- 모둠별로 연기 연습하기 - 직접 실연을 해 보면서 대본 수정하기	실연을 하면서 그때그때 스톱하고 수정을 할 수 있다. 모둠 내에서도 역할을 바꿔서 해보게 한다.
	25	모둠별 발표 I	- 모둠별 발표하기 - 다른 모둠의 발표 보고 의견 내기	한 모둠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다른 모둠원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생각한 것을 발표한다.
	26	모둠별 발표 II 및 활동 정리	- 모둠별 발표하기 - 바람직한 해결 방안 논의하기 - 참가 소감 나누기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그동안 발표된 드라마의 내용 중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만드는 아름 다운 세상	27	작은 권리 지키기의 중요성	- 작은 권리 지키기 일반사례 - 침해당한 작은 권리 10가지 - 해결할 우선과제 선정하기	오용현 할아버지의 작은 권리를 지키는 활동 사례를 배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본다.
	28	작은 권리 지키기 활동계획	- 작은 권리 지키기 학생사례 - 작은 권리 지키기 활동 계획 - 활동보고서 작성 방법 배우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홀히 하거나 놓치기 쉬운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한 계획을 짜보고 이를 실천한 후 보고하는 활동을 해 본다.
	29	국가인권 위원회의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의 활용 - 모의 국가인권위원회	주어진 인권 문제에 대하여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는 훈련을 한다. 모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도 해 본다.
	30	인권을 넘어	- 생명의 존엄성 - 태아의 권리 - 미래세대와의 대화	인권 개념을 태아와 동물, 미래에까지 확장시켜 본다. 과연 인권개념이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어떻게 지평을 넓혀야 하는지를 탐구해 본다.
맺음	31	잊지 말자, 사람 존중	- 사람 존중의 의미 - 나 존중, 너 존중, 모두 존중 - 상생의 원리와 공동체	이제 종결할 때이다.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존중이다. 존중한다면 모두 다 해결된다. 이것만은 잊지 말자!
	32	인권 100% 세상을 향하여	- 인권 100% 세상 그리기 - 나의 인권 실천 다짐 - 인권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권 100%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 활동을 통해 해야 할 일을 내가 다짐한다.

4. 차시별 진행요령

본 프로그램은 교사중심이 아닌, 학생중심 활동으로 전개되도록 고안되었다. 학생 중심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수업의 단계를 준비 단계 → 전개 단계 → 정리 단계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준비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수련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확인하도록 한다. 어떤 교사에 따라서는 이 단계에서 간단한 게임, 노래, 유머, 명상 음악 등 Ice-Breaking 기법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전개 단계에는 파악된 학습 과제에 대해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이 전개되는 단계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대체로 2~3개의 활동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활동자료> 형태로 안내되고 있는데, 교사들은 학급의 실정에 맞게 재편성할 수 있다. <읽기자료>의 경우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고, 활동을 하는 중에 개별적으로 읽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교사용 참고자료>는 안내자에게 필요한 심층적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제시할 필요는 없다.

정리 단계에서는 활동 경험의 소감을 나누도록 편성하였다. 소감 나누기는 개별적, 혹은 모둠별로 진행할 수 있다. 모둠별로 진행할 경우 모둠에서 진행된 소감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에는 각 활동이 끝나면 소감을 나누도록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 정리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VI. 맺음말

VI. 맺 음 말

우리 시대를 다른 눈으로 보면 인권의 혁명 시대이다. 그동안 시민권이라는 차원에서 소수 지배자에 대하여 다수의 집단이 시민적 권리를 쟁취하여 오던 지난날의 역사를 넘어 이제는 이러한 다수로부터 다시 소외받아온 소수의 인권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제도화되는 시기이다. 특히 시민 교육의 보루였던 학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문제되고 이를 제도화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인권의 혁명 시대에 조용한 또 하나의 혁명이 불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아닌 인권교육의 혁명이다. 시민 교육, 법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던 인권교육 만으로는 변화하는 인권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며, 다양한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인권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피해자적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지만,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한 학습 조직 내에서나 실행 가능하고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전면화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사람이 하늘이다” 편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아의식이 상당 부분 성숙하였으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이들에게 인권 존엄성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인권 세상을 열기 위한 참여 욕구도 크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내놓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프로그램은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적 아래, 존엄성에 대한 자각, 인권 개념의 진화에 대한 신념,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저항권의 의미 파악,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배려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대해 공감, 인권 갈등의 해결에서의 공동체 원리, 세계 시민 및 생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관점의 수용이라는 세부적 목표를 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 속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나는 인권 요구를 반영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저항권 등의 시민권 개념뿐만 아니라, 연대권, 정보인권 등 제3 세대 인권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아동의 권리, 이주 노동자의 권리, 미래 세대의 권리, 동물의 권리 등 다양한 인권의 문제를 탐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꾸몄다.

본 프로그램은 K-10 단계의 창의적 재량시간 내 독립적 교과목으로 학교가 채택하여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으며, 한 차시 50분에 전개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발달 단계, 지역적 특수성, 학생들의 요구, 시연 장소, 지역사회 현안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캠프용 프로그램에서는 차시가 아닌 단원 전체를 모듈 단위로 수행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본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안내 멘트를 충실히 기술함으로써 교사들이 많은 사전 준비 없이도 수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의 사전 준비가 많으면 그만큼 프로그램 실행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수 체제의 지원 등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매우 안정된 환경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인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인권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더욱이 교사 자신이 인권교육의 최대 모델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언어와 행동, 사상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프로그램 외에도 연구진들은 연구보고서라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인권 및 인권교육을 둘러싼 이론적 배경, 국내외 인권교육 동향, 타 프로그램 벤치마킹, 쟁점 논의 등이 포함되었다. 인권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는 인권의 역사적 배경, 인권의 성격, 인권의 여러 개념, 인권교육이 기술된다. 인권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일반적인 목표와 내용, 방법을 차례로 다루어졌다. 국내외 인권교육 동향에서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인권교육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에서는 학교 및 국가기관, 시민단체의 인권교육 현황을 소개하였다.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국가의 학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다. 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 개인의 인권 관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인권 의지를 다음 세대에게 실현시킨다는 차원에서 마땅히 인권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행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엄성, 타인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을 내면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학교가 인권이 충만한 현장이고 인권 의식이 퍼져가는 보루로서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고 문 헌

[국내 학위 논문]

문미희, 『사범대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4.

송호섭, 『인성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정윤아, 『고등학교 일반사회과에서의 인권교육 개선방안 :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방안』,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국내 단행본]

강순원·구정인·김종수·배민아·이원표,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도서출판 해오름, 2003.

구정화 외,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인권교육교재 시리즈2』,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용린 외,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

문용린, 『청소년의 도덕성·범의식 발달·비행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4.

杉原泰雄, 『인권의 역사』, 한울, 1992.

성공회대 인권과 평화위원회, 『인권교육에 관한 견해』,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199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시아의 인권교육』,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

이기규, “인권교육 현실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 『범국민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집』, 범교육국민연대, 2004.

이용교·이희길(역), 『인권교육의 기법』,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인권운동사랑방, 2000.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우리교육, 2003.

차우규 외,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인권 교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도서출판 방문사, 2000.

한국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초·중·고 인권교육 길라잡이』, 한국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 2003.

한홍구·이대훈, “국가인권교육계획의 세계적 맥락과 외국의 실태”, 『국가인권교육계획 관련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

허상수·최재훈,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국가인권교육계획 관련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

충남사회과ICT활용수업연구회,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 충청남도교육청, 2004.

[국내 연구 논문]

임용수, “인권의 교육학적 의의와 인권교육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집』, 1994.

박상준, “행위성향중심의 인권교육”, 『인권논문 공모사업 수상 작품집』, 국가인권위원회, 2002.

홍성필(이화여대 법학과), “아·태지역 인권기구의 설립: 전망과 과제”, 『국제인권규약 채택 30주년 기념학술대회』, 대한국제법학회, 1996.

[국외 문헌]

Brabeck, M., M. Kenny, S. Stryker, T. Tollefson & M. Sternstrom,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the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Program.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3, No.3, 1994.

Howard Tolley Jr., Project THRO : Teaching Human Rights On-line, Human Rights

Quarterly13, 1998.

Lister, I.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 Strasburg : Council of Europe, 1984.

United Nations, ABC, *Teaching Human Rights.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2003.

[연구보고서]

2005년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 쇄 일 2005년 11월

발 행 일 2005년 11월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우)100-842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 (02) 2125-9671
FAX : (02) 2025-9677

연구기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http://www.school1004.net>
전화 : (02) 877-8393
FAX : (02) 745-7298

인 쇄 삼도실업주식회사
전화 : (02) 737-7151
